

2024년도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안내

『경상남도과 시·군이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위하여
중위소득 70%이하 가구 초·중·고 학생에게 교육지원카드를 지원합니다.』

지원대상 도내 초·중·고 학생

선정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

(단위 : 원)

가구원수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월소득인정액	1,559,912	2,577,826	3,300,260	4,010,939	4,687,015	5,332,858

※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등 실제 월 소득에 집이나 자동차, 금융재산 등 재산환산액을 더하고 각종 공제액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. 즉, 소득인정액 = 월소득 평가액(실제소득) +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- 각종 공제액

신청기간 2024. 2. 13.(화) ~ 7. 31.(수)

신청자 학생을 법률상·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

신청장소 학생 보호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
온라인 신청(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: www.gnedu.kr)

신청서류 「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신청서」와 「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서」

※ 신청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2023년 대상자 중 현재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자(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)는 올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 그 밖에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바랍니다.

지원내용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지급(구 여민동락카드)

- 승인된 가맹점(교육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)에서 자율 사용
- 도서 및 학습물품 구입, 온라인 강의 수강에 사용(생활용품, 장난감 구입 불가)
- 교육지원카드 포인트는 선정 시 일괄 충전

신청문의

창원시 225-2384 진주시 749-8323 통영시 650-2613 사천시 831-2597 김해시 1577-9400 밀양시 359-6004
거제시 639-3855 양산시 392-2576 의령군 570-2143 함안군 580-3445 창녕군 530-2053 고성군 670-2615
남해군 860-3865 하동군 880-2183 산청군 970-6123 함양군 960-4642 거창군 940-8813 합천군 930-3167

Q&A

2024년도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



누가 받나요?

- 기준 중위소득 70%이하 즉,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401만원 이하인 가구의 초·중·고 학생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
언제, 어디서 신청하나요?

- 2024.2.13.(화)부터 7.31.(수)
학생의 보호자
- 보호자가 주소지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(www.gnedu.kr)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


2023년 대상자도 신청해야 하나요?

- 2023년 대상자 중 (24년 현재) 중위소득 70% 이하 대상자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고, 그 외 대상자와 신규신청자는 신청이 필요합니다.
- 신청 필요 여부에 대한 확인은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



지원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?

- 학생 보호자 가구의 소득, 재산, 금융 등 조사를 통해 선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며,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별도 통보합니다.



카드는 어디서 발급 받나요?

- 선정통보를 받으신 후 학생 보호자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카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



카드 발급 후 사용등록을 해야 하나요?

-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(www.gnedu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직접 사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.

※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접속 ▶ 카드사용등록 선택 ▶ 학생 본인 확인 ▶ 발급받은 카드정보 입력 ▶ 카드사용등록 완료

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- 선정된 학생에게 연간 10만원의 교육지원카드를 지급하며, 도서 및 학습물품구입, 온라인 강의 수강 등 등록된 가맹점에서 자율 선택하여 사용 가능합니다.



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?

- 2024.11.30.(금)까지입니다.
-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여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.



2023년 대상자인데 카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?

- 기존 보유카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.



부정사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?

-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, 양도 또는 판매(시도한 경우 포함)
- 카드 선결제 후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, 구입 불가품목 구매 등

※ 부정사용의 경우 사용액 전액 환수 조치 및 향후 2년간 대상자 선정 제외